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1. 10. 13.(수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최경천 의원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1년 10월 1일
- 회부일자: 2021년 10월 5일

3. 제안이유

-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변화에 필요한 교육환경 구축과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및 제2조)
- 교육감의 책무 (안 제3조)
- 기본계획 수립 등 (안 제4조)
- 지원사업 (안 제5조)
-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설치 (안 제6조)
- 시범학교 운영 (안 제7조)
- 교원 연수 등 (안 제8조)
- 협력체계 구축 (안 제9조)
- 시행규칙 (안 제10조)

5. 참고사항

- 입법예고 : 2021.9.24.(금) ~ 2021.9.29.(수) 특기할 사항 없음

6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과 정의,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음.
- 안 제4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충청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,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5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 교육내용 개발 및 컨설팅과 교원 연수 등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진흥 사업에 대하여 정하고, 안 제6조에는 4차 산업혁명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청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.
- 안 제7조에는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안 제8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교원 연수 및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는 협력체계를 구축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변화에 필요한 교육환경 구축과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